

의안번호	2212268
의 퇴 인	김대식 의원
회 답 일	2025.09.12.
추 계 번호	25C4298

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①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②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6,200만원, 2030년 1,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억 1,000만원(연평균 5,2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250	-	-	-	-	250	50
위원회 설치(안 제8조)	12	12	12	12	12	60	12
합 계	262	12	12	12	12	310	52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(제1항) 국가는 인공지능인재를 육성·활용하고,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·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를 육성·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·연구기관 및 기업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·활용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5조 (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 기본계획의 수립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·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7조 (인공지능인재의 실태조사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1. 인공지능인재의 수급 동향 2. 인공지능인재의 국내외 유입·유출 현황 3. 인공지능 관련 학사·석사·박사의 재학·졸업 현황 및 경력사항 4.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의 연구·교육 환경 5. 대학등의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 계획 6. 그 밖에 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8조 (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)	(제1항)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의무규정
5	안 제9조 (인공지능 연구 대학생 지원)	(제1항)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(이하 “인공지능분야”라 한다)를 전공하는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용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6	안 제10조 (인공지능 연구 대학원생 지원)	(제1항) 국가는 인공지능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및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다. (제2항) 국가는 인공지능분야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,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,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7	안 제11조 (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원)	(제1항) 국가는 인공지능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“인공지능 박사후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경력 설계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,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8	안 제12조 (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(이하 “특성화대학등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.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.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.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12조 (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)	(제3항)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9	안 제14조 (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의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 육성 혁신센터(이하 “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(제3항)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0	안 제15조 (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의 설립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·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(제5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	의무규정 재량규정
11	안 제18조 (인공지능인재의 연구·개발 활동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인공지능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(제2항) 국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공지능인재의 안정적 연구·개발 활동을 지원하고,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	재량규정 의무규정
12	안 제19조 (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이 인공지능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(제2항) 국가는 인공지능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·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3	안 제20조 (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)	(제1항) 국가는 인공지능인재의 자질향상과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복무와 교육, 연구, 취업 및 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4	안 제21조 (인공지능 지역인재의 확보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분야의 지역 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2.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 육성 3.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·교육·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. 그 밖에 인공지능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(제2항) 국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5	안 제22조 (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)	(제1항) 국가는 해외 인공지능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6	안 제23조 (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인공지능인재가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.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. 해외 인공지능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.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. 해외 인공지능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.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.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6	안 제23조 (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)	(제2항)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.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. 그 밖에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	재량규정
17	안 제24조 (해외교류·연수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를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인재의 해외교류·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8	안 제25조 (인공지능인재의 재교육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·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·재훈련 및 경력개발(이하 “재교육등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	재량규정
19	안 제26조 (세제지원에 관한 특례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· 이는 선언적·권고적 형식의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2	안 제5조 (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 기본계획의 수립)	○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7조 (인공지능인재의 실태조사)	×	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인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기존 유사 조사와의 중복이 존재하여 산출이 어려움 ·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'19년부터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해당 조사는 인공지능 인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¹⁾)
4	안 제8조 (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)	○	
5	안 제9조 (인공지능 연구 대학생 지원) 안 제10조 (인공지능 연구 대학원생 지원) 안 제11조 (인공지능 연구 박사후연구원 지원)	×	제정안은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,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대학생, 대학원생, 박사 학위 취득자(이하 “대학생등”)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·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기존에 수행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· 교육부는 AI 분야 교육연구단 지원예산으로 '25년 기준 1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, '26년 AI·소프트웨어 분야 대학(원)생 대상 학자금대출 지원 사업을 신설 예정임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분야를 포함한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, 연구생활 장려금 등 지원을 수행 중이며, '25년 기준 1,173억원이 편성됨
6	안 제12조 (인공지능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) 안 제14조 (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의 지정)	×	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인공지능 특성화대학, 인공지능 인재혁신센터를 지정하고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기관의 수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7	안 제15조 (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의 설립)	×	제정안은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출연·보조하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재단의 구체적인 구성, 지원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
1) 직업별 인력 현황, 개발자 부문 인력 현황, 학력별·경력별 인력 등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8	안 제18조 (인공지능인재의 연구·개발 활동 지원) 안 제19조 (기업 등의 인공지능인재의 활용 지원) 안 제20조 (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) 안 제21조 (인공지능 지역인재의 확보)	×	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인재의 취업·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, 이를 군 복무와 연계하도록 규정함 · 아울러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지역인재 확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· 동 규정은 인공지능인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의 구체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발생할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
9	안 제22조 (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) 안 제23조 (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정주여건 지원) 안 제24조 (해외교류·연수 지원) 안 제25조 (인공지능인재의 재교육 등) 안 제26조 (세계지원에 관한 특례)	×	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인공지능인재 유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인공지능인재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·교류, 재교육, 세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·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 기존에 수행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유치 및 국제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'25년 기준 해외인재 유치에 50억원, 국제연구 지원에 695억원이 편성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서에서는 ①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의 수립(안 제5조), ②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설치(안 제8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
- (안 제5조)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이하 “「인공지능기본법」”)의 계획 수립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
 - － 2026.1.22. 시행 예정된 「인공지능기본법」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등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²⁾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

2)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

제6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

예정액을 준용함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
-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함
- (안 제8조) 위원회 설치·운영에 회의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을 추계
-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된다고 가정

□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□ 추계의 전제에 따라 「인공지능기본법」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편성 예정액을 준용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억 5,000만원(연평균 5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2] 인공지능인재 육성·활용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250	-	-	-	-	250	50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·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~ ⑦ (생략)

나.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)

□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위촉위원 수에 참석 수당과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6,000만원(연평균 1,200만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

- (위촉위원 수) 제정안의 규정을 참조하여 10명으로 가정³⁾
 - － 제정안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6명이고 위촉위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음
- (참석 수당)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참조하여 30만원으로 하되,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다고 가정
 - －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은 1일당 15만원내로 하고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만원내로 편성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동 규정은 최근 5년간 개정된 바 없음
 - － 동 지침은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료, 원격지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(회의 횟수) 분기별로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연 4회로 함

[표 4] 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 추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위촉위원 수(A, 명)	10	10	10	10	10	—	—
참석 수당(B, 만원)	30	30	30	30	30	—	—
회의 횟수(C, 회)	4	4	4	4	4	—	—
추가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안 제8조(인공지능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등)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국방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2. 위원장이 위촉하는 시·도지사
3. 인공지능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
요가 변동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